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536호
- 발 의 자 : 김정환 의원 외 17명
- 발의일자 : 2019년 3월 29일
-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1호, 안 제10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협의완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5.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에 대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임.
-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는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는 평균 약 552명이 해당됨.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최근 3년 간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 수>

구 분	의사자 (a)	의상자 (b)	의사자 유족 (c=a x 3)	의상자 (활동보조자 동행) (d=b x 2)	의상자 가족 (e=b x 3)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f=c+d+e)
2016	82명	59명	246명	118명	177명	541명
2017	85명	60명	255명	120명	180명	555명
2018	85명	61명	255명	122명	183명	560명
연평균	84명	60명	252명	120명	180명	552명

- 안 제9조제3항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시립 체육시설의 시설관람 입장료를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현재 입장료는 500원 이상 1,000원 이하(2002 FIFA 월드컵기념관의 경우에는 1,000원,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의 경우에는 500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입장료 감면>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입장료) ①·② (생 략)</p> <p>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p> <p>1. 12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p> <p>2. (생 략)</p>	<p>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p> <p>-----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다둥이 -----</p> <p>2. (현행과 같음)</p>

전용사용료 30%를 감액함에 따른 세입은 연간 약 21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어 시 세입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 보훈정책의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한편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4개 시·도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30~50% 범위에서 감면하고 있음.

<타 시도 감면>

연번	시도명	조례명	관련 조항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②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100분의 50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 100분의 30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2. 100분의 50 감면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